

① 투기과열지구

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할 때까지 금지 단, 5년을 초과하면 금지기간은 5년이다.

- ②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・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 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(1지역:등기,2지역 1년 6월, 3지역: 공공택지(1년), 공공택지외 지역: 6개월)
- ⊙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"입주자로 선정된 날"부터 기산한다
- ©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 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

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 에 대하여 '인주자 모집공고 승 인신청일(조합:사업계획승인일) 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(입주가 **능일) 이후 60일까지**'의 기간동 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의 설정행위 와 매매증여 등의 처분 X.

- 외에 체류하려는 경우
- 4.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 에게 이전하는 경우
- 5.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 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(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확인하는 경우
- 6. 주택소유자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
- 7.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
- ➡단, 사업주체의 동의 얻으면 가능(분양가상한제/공공택지외)

고상철선생의 흐름잡는 부동산공법 체계시리즈

주택건설사업지

대지조성사업자

(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)

한으로 등록 필요 X)

공동사업주체(토지소유자, 조합, 고용 자(의무) ⇒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시행

연간 20호 이상

연간 20세대 이상

연간 1만째 이상

비

업자

등록업지

업주체